

규 칙 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근]

목 차

- 1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02. 27.

나. 발 의 자 :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홍섭, 이흥희, 박수자,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02. 27.

2. 제안이유

- 실제 출장 사유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칙의 적용 범위를 실수요에 맞도록 개정하여 출장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 범위확대(안 제2조)
 - 1) 현행: 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2) 변경: 중앙정부, 거창군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 연임제한 신설(안 제4조)
- 용어순화, 인용 조례명칭 등 정비(안 제4조·제6조·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집행부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규칙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거창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른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새로 위촉 한다.

⑤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 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